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946

발의연월일: 2024. 12. 26.

발 의 자: 안태준 · 박해철 · 복기왕

염태영 · 소병훈 · 서미화

전현희 • 이연희 • 서영석

송기헌 · 정준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운송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 운송가맹사업, 플랫폼운송중개사업) 제도가 도입·시행(2021. 4. 8 현행법 개정)됨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려는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택시기사는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받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의 가맹 가입여부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차별하여 불공정하게 배차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 있으며, 이는 택시 운송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 위로서 재발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됨.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수취하는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 우려도 상존하여, 현행 중개요금 관련 신고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음.

이에,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불공정한 배차로 택시운송시장의 질 서를 저해하거나,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등에 대 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여, 운송플랫 폼사업자와 택시사업자 간 공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이용객들이 편 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안 제49조의20 신설).

법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2에 제49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1. 플랫폼중개사업의 여객의 공정한 배정에 관한 사항
- 2. 플랫폼중개요금(여객 운송 외 부가서비스 운영에 따른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안전운송의 확보와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79조제1항제3호 중 "제49조의14"를 "제49조의14, 제49조의20"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22호 중 "제23조·제33조·제44조 또는 제49조의7"을 "제23조·제33조·제44조·제49조의7 또는 제49조의20"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의 개
	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
	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
	<u>할 수 있다.</u>
	1. 플랫폼중개사업의 여객의 공
	정한 배정에 관한 사항
	2. 플랫폼중개요금(여객 운송
	외 부가서비스 운영에 따른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전운송의 확보와
	<u>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u>
	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79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	제79조(보고·검사 등) ①
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	

록 명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 조의7, <u>제49조의14</u>에 따른 개 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 8. (생략)

②·③ (생 략)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 부장관, 시 · 도지사(터미널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 · 군 수 · 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 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 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 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 제8호 • 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 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u>제49조의14, 제49조의20</u>
4.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u>.</u>

- 1. ~ 21. (생 략)
- 22. 제23조·제33조·제44조 또 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 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3. ~ 41. (생략)
- ② ~ ④ (생 략)

- 1. ~ 21. (현행과 같음)
- 22. 제23조·제33조·제44조· 제49조의7 또는 제49조의20--

23. ~ 4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